

영업업무 위탁 계약서

※본 계약서는 표지포함 총6매임



주식회사 이앤모바일

영업업무 위탁 계약서

주식회사 이앤모바일(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렌탈 본사의 제품 영업 위탁에 필요한 기본 원칙 및 관련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권리의무관계, 위탁업무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정의 및 의무】

갑과의 영업 위탁계약을 통해 유치한 고객으로서 갑은 고객 유치 업무에 필요한 전산 및 정보
제공만 할 뿐, 사은품 지급, VOC(고객클레임) 업무처리, 해지 수수료 환수 등 고객 관리에 의무
는 을에게 있다.

갑과 을은 업무위탁에 따른 렌탈 판매 및 관련 위임에 따른 법령 등에 의거 위탁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갑은 을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3 조 【위탁업무 범위】

(1) 갑이 위탁하여 을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일반 소비자용 정수기,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 고객 유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을이 영업 유치한 고객에 대한 전산 청약 업무
- ③ 기타 고객 유치 관리 업무, 관련 부대 업무(사은품 지급, 클레임 해결 등)
- ④ 기타 갑이 업무제휴를 통하여 진행하는 업무 중 을과 협의가 이뤄져 위탁된 업무

(2) 갑이 위탁하여 을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아래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렌탈 본사의 상호, 상표, 마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을의 영업 대상 지역 및 상품은 갑의 영업 대상 전 지역으로 하며,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단, 갑과 거래 관계가 있고, 계약관계가 있는 렌탈 본사가 제한한 지역이나
상품에 대하여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렌탈 본사의 서비스 제공 지역이나 상품, 영업 정책의 변경 시 갑은 을에게 통보하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변경 또는 확대, 축소 될 수 있다.
을은 위탁업무의 수행이 지속적으로 불가할 경우 수행(예정)일 1개월 전까지 갑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사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 4 조 【고객 유치 및 조건】

- (1) 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갑 또는 렌탈 본사가 제공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가입 조건을 고객에게 제공 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고객 유치 시 고객의 동의 없이
또는 갑이 제시하는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을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을은 가입 유치하여 지급된 영업수수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고객 해지 또는 오 판매로 인하여
갑이 손실 및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관 또는 계약이 종결된 후에도 책임배상이 있으며,
각종 손실 기준 및 해지 환수 기준은 렌탈 본사의 영업 규칙에 따른다.
- (3) 렌탈 본사가 제시하는 서비스 약관 내용의 중요 부분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적법 유효한 가입신청, 개인정보 이용 등의 고객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을 또는 을과 계약한 재 위탁업체가 고객의 동의없이 또는 렌탈 본사가 제시하
는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제시하여 고객을 유치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로 인한 모든 손해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 (4) 을이 판매한 렌탈 고객이 1년 이내에 제품을 반환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100%를 갑에게 반환하며, 그 반환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제 5 조 【 위임 수수료 및 실적 산정 】

- (1) 수수료는 을이 판매한 렌탈 판매 실적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에 의하여 갑이 지급한다.
- (2) 갑은 약정수수료 지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설치완료 기준을 하여 익월 20일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 (3) 수수료의 지급은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위탁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을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 자유근로소득자의 경우 지급액의 13.3% 공제 과표 신고 후 지급한다.
- (7) 모든 실적산정은 갑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을 기준으로 정산 처리한다.
- (8) 수수료 지급사인 렌탈 본사의 수수료 지급 기일의 변경 및 지연으로 인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다.
- (9) 을은 갑의 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수수료 지급내역 전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지정된 이메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 수수료의 차감 및 지급제한 】

갑과 을의 각 호의 해당하는 계약 해지 시 원활한 업무처리(고객에게 지급될 사은품 및 VOC 업무처리, 해지 환수 등)을 위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1)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 영업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 (2) 갑 또는 렌탈 본사가 정한 영업지침을 위반하여 영업을 수행한 경우
- (3) 현금, 상품권 등 현가성 물품을 홈페이지 및 온라인상에 기재하거나 요금을 자체적으로 낮게 하여 렌탈 본사가 정한 벌금을 납부할 경우
- (5)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6) 수수료 지급 시 선금금, 적립금, 해지 환수금, 사은품 부대비용, 클레임 발생 비용 등 발생 되는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 (7) 당월 실적이 전월 실적보다 현저히 저조하거나 거래가 없는 경우

제 7 조 【 고객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

- (1) 을은 고객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개정 또는 신설되는 법령이나 고시, 지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또는 신설되는 것도 포함한다.
- (2) 을은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정보 수집, 사용 목적 등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을 고객에게 알리고,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고객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3) 을은 고객으로부터 얻은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4) 을이 상기 조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벌금, 과태료, 렌탈 본사로부터의 패널티, 환수 등이 부과 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동 벌금, 과태료, 렌탈 본사로부터의 패널티, 환수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을은 본 계약의 이행 중에 취득한 갑의 사업정보, 고객정보, 본 계약서 및 기타 정보 등을 위탁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같다.
- (6) 을이 제 5항을 위반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 계약해지 】

- (1)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① 을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 ②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③ 을이 위탁계약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법률 등에 의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갑이 판단하는 경우
 - ④ 을이 갑의 동의 없이 해당 위임업무를 제2자에게 재 위임하는 경우
 - ⑤ 매출 실적으로 허위로 매출 행위를 하는 경우
 - ⑥ 은행거래를 정지당한 경우
 - ⑦ 을이 영업 업무가 3개월 연속적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⑧ 위탁업무 수행 중 갑의 이미지를 현저하게 저해하여 갑의 일정 시일 내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 (2)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 해지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을이 모집한 고객에 대한 모든 권리가 종료되고 을이 관리하는 고객에 관한 자료 등 위탁된 일체의 업무를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3) 을이 모집한 고객의 VOC(클레임) 민원의 발생과 렌탈 본사의 환수 정책에 의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4) 갑의 자금이 투입된 연동홈페이지를 을이 임대 및 구매한 경우 본 계약 종료 시 홈페이지 이용이 제한된다.
- (5) 계약 해지 시 제7조 규정에 따라 갑은 을의 수수료를 일부 보류할 수 있다.

제9조 【 손해배상 】

- (1) 을이 제2,3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고객 신용 정보 및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을의 과실로 문제 발생 시 을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손해 발생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을 또는 을과 계약한 재 위탁업체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을의 의무 위반, 불법행위 각종 규제 위반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직,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갑이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갑과의 계약 중, 렌탈 본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타 회사로 계약 접수하는 경우 또는 갑과의 계약종료 된 후 1년 이내에 렌탈 본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타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을에 대해 제공했던 질적 정보와 노하우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규정에 따라 을은 배상하여야 할 갑의 손해가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미지급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을에게 사전 통보 후 미지급 수수료에서 우선적으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다
- (6) 을은 렌탈 본사의 상호, 상표, 마크 등을 오용하여 발생한 렌탈 본사의 유, 무형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 통지의 의무 】

- (1)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상호, 영업 소재지 변경
 - ② 사업자 지위의 변경
 - ③ 대표자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 ④ 업무 재 위탁의 사실
 - ⑤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거래 계좌 변경
 - ⑥ 기타 위탁업무 계약의 존속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 (2) 제1항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갑에게 손해 발생시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 위탁업무의 양도 및 질권 금지 】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 계약의 해석 】

본 계약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 관할법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로 한다.

제14조 【 계약기간 및 계약효력 】

- (1) 본 계약은 갑과 을의 대표 또는 대표를 위임을 받은 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동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 ~ _____ 으로 하되, 제9조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로 한다.
- (3) 본 계약은 갑 또는 을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에 대한 특별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 각 1통씩 보관한다.

사업자 정보 및 계약사항

| | | | |
|--------|--|--------|---|
| 회사구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 과세표시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과세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
| 상호 | 바른통신 2 | 일반과세자 | |
| 사이트 주소 | whrudals 0861 | | |
| 담당자명 | 최라원 | 팩스번호 | 02-3493-8399 |
| 전화번호 | 010-7618-1419 | 부서명/직위 | 대표 |
| 긴급연락처 | 010-7618-1419 | E-mail | whrudals0861@naver.com |

본 영업업무 위탁 계약사항을 숙지하고
상기와 같이 계약 체결에 동의합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에 서명/날인 후,
1부는 "갑(이앤모바일)"이 보관하고 1부는 "을"에서 보관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갑]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앤모바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50, 4층(상희빌딩)

사업자(주민)번호 : 204-86-43788

대 표 이 사 : 이 상 열



[을]

회 사 명 : 바른통신 2

주 소 : 광진구 경곡동 125-1

사업자(주민)번호 : 6011-40-16390

대 표 이 사 : 최라원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등록번호 : 607-40-16390

상 호 : 빠른통신2

성 명 : 최라원

생년월일 : 1986년 11월 15일

개업연월일 : 2017년 02월 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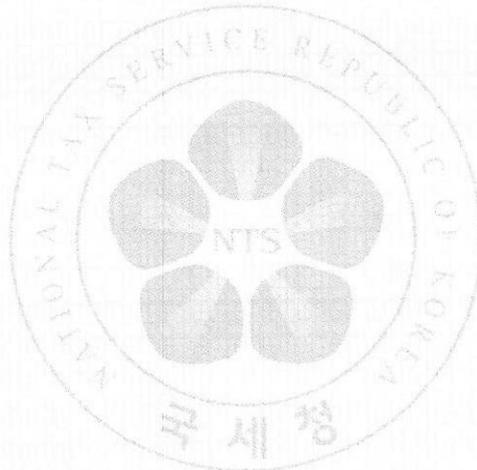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06(중곡동)

사업의종류 : 업태 도소매

종목 통신기기

발급사유 : 신규

공동사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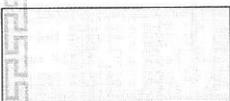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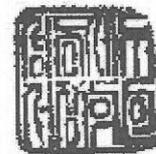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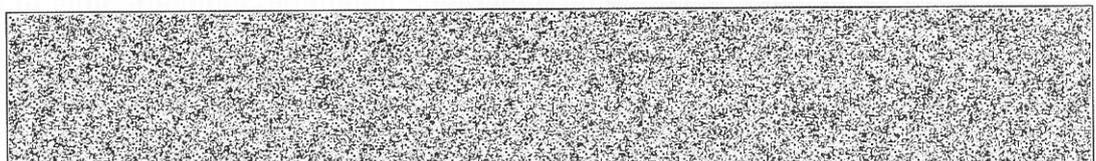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7년 02월 24일

성동세무서장



국세청



주민등록증

최라원(崔羅元)

861115-222362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
로 68, 301호(금정훼밀라)

2014. 2. 5.

경기도 남양주시장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기업은행

최라원

배분통신2

계좌번호 010-9006-8737 (평생계좌)

523-050951-01-011(계좌번호)

예금종류 **평생** 저축계좌 **기업통장**

보통예금

중소기업은행



통장일련번호 1

| BC 결재 | 인터넷 뱅킹 | 텔레 뱅킹 | 계좌 이체 | 지포 이체 | CD 카드 | i-ONE 뱅크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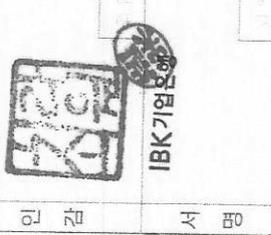
신규입2017 104 월 27 일

발행일2017 104 월 27 일

신규점권점 031 527 0082

발행점권점 031 527 0082

서명거래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
www.ibk.co.kr

오픈웹뱅킹
open.ibk.co.kr

은행별 코드 안내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
| 기업 | 003 | 상호저축 | 050 |
| 경남 | 039 | 새마을금고 | 045 |
| 광주 | 034 | 수협 | 007 |
| 국민 | 004 | 신한 | 088 |
| 농협은행 | 011 | 신협 | 048 |
| 단위농협 | 012 | 우리 | 020 |
| 대구 | 031 | 우체국 | 071 |
| 부산 | 032 | 진보 | 037 |
| | 002 | SC제일 | 023 |

i-ONE뱅크
스마트폰에서 뱅킹서비스,
상품가임, 자산관리까지!

앱다운로드 : one.ibk.co.kr
(모바일 전용)
* Play 스토어, App Store 에서
"i-ONE뱅크" 검색

텔레뱅킹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 1588-2588
☎ 1566-2566

◆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 및 코드

| 서비스종류 | 코드 |
|--------------|-----|
| 무통장입금 조회 | 111 |
| 잔액 조회 | 112 |
| 당·타행 송금 | 211 |
| 텔레뱅킹 비밀번호 설정 | 911 |

* 당·타행 송금은 텔레뱅킹에 가입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외 환

◆ 기업은행 영문명 :
INDUSTRIAL BANK OF KOREA

◆ SWIFT CODE : IBKOKRSE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100원
남대문세무서장
후남승인 2013년 6호